

울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12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변 론 종 결 2021. 9. 8.(피고 C, E에 대하여) 2021. 11. 3.(피고 D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총 4인은 2017. 6. 27. 울산 북구 F 답 1,347㎡와 G 답 2,155㎡에 관하여 1998.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인당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의 전(前) 소유자는 ‘H’이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인 2017. 6. 27.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의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위 각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H가 2017. 9. 6.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4677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7. 12. 27.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인 I과 합의하여 합의금의 일부로 95,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339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의 대리인 I이 나머지 합의금 9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I은 피고 D, E의 대리인이 아니고, 피고 D, E이 I에게 87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 E은 232,500,000원으로 매매하는 데 서류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어서 피고 E과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피고 E은 원고와 피고 C이 체결한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I이 피고 D, E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및 피고 D, E이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이행각서)에도 피고 D, E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다}.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별지